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535호
- 발 의 자 : 김정환 의원 외 17명
-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03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시립미술관 관람지원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대한 무료관람의 내용을 신설함(안 제9조 제1항제5호의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안의 취지

- 동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려는 동 조례안의 취지는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사상자 등의 문화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.

나. 의사상자 등의 법적 지원 근거

1) 의사상자 등의 정의규정

- 의사상자(義死傷者)에 대한 정의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우를 하고 있음.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의사자(義死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3. "의상자(義傷者)"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.
4. "의사상자"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.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2) 의사상자 등의 지원 범위

- 2019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,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임.¹⁾
- 의사상자 등에게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, 국공립공원,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음.

1) 보건복지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사이트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〔별표 3〕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(제18조제3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요금 감면율(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)
1. 고궁 및 능원	100분의 100
2. 국공립 공원	100분의 100
3. 독립기념관	100분의 100
4. 전쟁기념관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100
5.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(대관전시는 제외한다)	100분의 100
6. 국공립 수목원	100분의 100
7. 국공립 자연휴양림	100분의 100
8. 국공립 공연장(대관공연은 제외한다)	100분의 50
9. 국공립 공공체육시설	100분의 50

- 서울시는 위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2.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,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
3. 명절(설, 한가위)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
4.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
5.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따라서 동 조례안처럼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사료되며,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(9월4일 심의 예정).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이 「법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, 공원 입장료, 공연장 이용료,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「법」 제15조,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3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시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- 또한 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제1항은 무료관람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미술관의 관람료는 국민, 외교사절단,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, 조사연구자 등 공무수행 하는 자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특정 연령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명예시민 등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, 의사상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.

〈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무료관람)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.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의 법령에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자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〈신 설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 6.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7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8.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9.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<p>② (생 략)</p>	<p>제9조(무료관람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5. 「<u>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. ~ 10. (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관람료 면제 지원하는 동 조례안은 문화 진흥정책의 제도 내에서 문화를 통한 의사상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, ‘우리 삶을 바꾸는, 마음을 가진 미술관’이라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전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판단됨.

- 사회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문화향유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상자 등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 및 특별전의 무료관람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≒ 42,000천원(연 평균 8,400천원)

(단위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 감소	의사상자 등 무료관람 대상자 추가 (제9조제1항제5호)	8,400	8,400	8,400	8,400	8,400	42,000

다. 비용추계 전제

- 1) 의사상자는 2019년 1월 현재 서울시 거주 146명(의사자 85, 의상자 61)이고, 향후 인원 증감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
 - 의사자 유족은 선순위자가 모두 배우자이고, 그 자녀들은 2명으로 가정
 - 의상자는 부상등급이 모두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,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활동보조자 1명과 동행하는 것으로 가정
 -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는 3명이며, 의상자와 별도로 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가정
- 2) 의사자 유족, 의상자, 의상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의사상자 1인 당 관람횟수는 전시횟수별 1회로 가정
- 3) 서울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전시횟수는 최근 5년간 평균인 연1회로 하고 향후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
- 4) 서울시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관람료는 2019년 금액으로 동결한다고 가정

※ 최근 5년간 기획 및 특별전 전시 현황

구분	2015	2016	2017	2018	2019
기획 및 특별전	2건	1건	1건	-	1건
관람료(원)	13,000	13,000	13,000	-	15,000

라. 비용 추계 산식

○ 비용 추계 합계액 ≒ 8,400천원

- 의사자 유족(85명×3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3,825천원
- 의상자 수(61명×2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1,830천원
- 의상자 가족(61명×3명) × 1인 당 무료관람액(15,000원) × 연간 기획 및 특별전 개최횟수(1회) ≒ 2,745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박인근

☎ 02-2180-7934

e-mail : yab0217@seoul.go.kr